##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1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문대림·조 국·조인철

황정아 • 박홍배 • 윤준병

임미애 · 복기왕 · 윤건영

정진욱 · 정동영 · 박지원

민병덕 · 오세희 · 민형배

김영호 · 채현일 의원

(17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고, 스마트농업 시설의 기술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의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업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 등에 대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제14조제10항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연구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 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570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사업에 대하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의2(금융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구) - 기	ام اح الح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570호 스마트농업 육성	법률 제19570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
발 등) ① ~ ③ (생 략)	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
	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
	<u> 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기관</u>
	또는 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
	학협력사업에 대하여 연구 등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	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
지의 지정 등) ① ~ ⑨ (생	지의 지정 등) ① ~ ⑨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점
	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 등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다.
(생 략)	<del>^^ ''</del> ① (현행 제10항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u> </u>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 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 업 지원
-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 내외 판로개척
-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

   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의2(금융지원 등)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을 육 성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 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규제 개선) 농림축산식

<신 설>

<신 설>

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